◎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-302호

「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,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3조의4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(안 제3조)

- 「의료법」상의 의원과 병원(재활의료기관 포함) 중 지정기준 충족 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
-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근무인력은 상근하여야 하며, 필요한 시설(물리치료실 등)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

○ 지정을 위한 평가 등(안 제4조)

- 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 현황, 인력현황 등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
- 지정기준을 중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

○ 운영현황 평가 등(안 제9조)

-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기준의 충족여부, 운영현황 등을 평가해야 함

○ 지정의 취소 등(안 제10조)

-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 미 충족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, 불 이행시 지정 취소 가능

3. 의견제출

이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전자우편

1) 일반우편 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,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장애인건강과
2) 전자우편 : wjdgus3851@korea.kr

4. 기타
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→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(전화 044-202-3191, 31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